

한국발전공사법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38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박해철 · 박균택 · 한민수
임미애 · 김남국 · 임호선
이용우 · 이수진 · 김 윤
전은수 · 박정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고 석탄 산업 폐지 등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된 공기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발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정의로운 전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원의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사의 자본금을 6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공사가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관련 연구·기술 개발, 해외사업, 투자·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공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전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을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한국발전공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원의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발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 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① 공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근로자 고용 안정 및 전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를 설립한다.

1. 발전소의 보안·시설관리·방재·청소·안내·급식·홍보관
2. 그 밖에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제10조(자금의 조달) 공사는 그 운용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6. 자산운용수익금
7. 제13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8.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填)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

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운영비의 일부

2. 발전사업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제14조(조세지원) 공사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발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15조를 위반하여 한국발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이하 “5개 발전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 5개 발전사 본부장, 5개 발전사 근로자대표, 5개 발전사 자회사의 근로자대표, 그리고 발전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최초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5개 발전사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공기업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5개 발전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

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5개 발전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5개 발전사에 대하여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 공사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고, 5개 발전사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5개 발전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5개 발전사의 명의를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5개 발전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사업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수

의계약을 통하여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된 그 설립 당시의 5개 발전사의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자회사 설립 전까지는 종전의 자회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제9조(5개 발전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5개 발전사가 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